

# 2020년 8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(베트남/하노이지사 작성)

## 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### 1. 변경사항 (통관/검역/라벨링/인증 등)

#### 가. 자가 차량을 이용한 수입물품 운송 관련 관리방안 마련

- 수입물품은 베트남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운송업체의 차량이 아닌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- 수입업체가 수입물품 운송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수입업체가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통관 수속 전 자가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며, 이에 따라 통관 서류가 일반 통관 절차 대비 크게 간소화됨
- 다만,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수입업체 중 일부에서 정식 통관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한 후 통관 서류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통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-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세관총국은 2020.8.21. 공지한 제5777/TCHQ-GSQL호 공문을 통해 베트남 모든 도·성 관세청에게 수입되고 있는 물품을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조사 및 점검 등을 강화토록 지시하였으며, 각 관세청의 불공정 거래(뇌물, 지위남용 등)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
- 이와 함께 제5777/TCHQ-GSQL호 공문에서는 향후 자가 차량을 이용 ‘독립 배송방식’을 취하는 모든 수출입업체는 반드시 ‘수입면장, 자유판매증명서’ 등 수출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할 관세청에 일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

\* 출처 : <https://www.customs.gov.vn/Lists/VanBanPhapLuat/Attachments/13412/CV55772020TCHQ.PDF>

## 나. 개인·법인이 세관신고서에 명시한 물품 및 면세액의 법적 책임 발생

-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34/2016/NĐ-CP호에 의거 공지한 제5143/TCHQ-TXNK호 공문에 따라 2020.9.1.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세관신고서에 물품 및 면세액을 명시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고 공지
- \* 단, 재가공을 위해 수출입한 품목(원물)은 세관 신고 불필요
- 또한, 베트남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(FTA : Free Trade Agreement)의 특혜 관세율 조건에 부합하고 베트남 관세법에 규정된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또는 베트남 관세법 중 보다 유리한 면세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공지

\* 출처 : <https://www.customs.gov.vn/Lists/VanBanPhapLuat/Attachments/13380/CV5143TCHQ2020.PDF>

## 2. 시사점

-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, 한국은 한·아세안 FTA(AKFTA)와 한·베 FTA(VKFTA)에 의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, 최근까지 많은 한국 수출입 기업들이 통관 수속절차 진행 시 수입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특혜관세율을 제대로 파악하여 신고한 업체가 거의 없다고 밝혔음
- 따라서 수출입 기업들이 세관 신고 시 베트남이 타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(예 : VKFTA, AKFTA) 또는 베트남 관세법 중 보다 유리한 수입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입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

## 3.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||

##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### III

## 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- 특이사항 없음

### IV

## 기타사항

### 1. 베트남 정부, 모조품 생산·매매 등 무역활동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

- 베트남 정부는 모조품의 생산 및 매매 등 무역활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시행령 제98/2020/NĐ-CP호를 2020.8.26. 공포하였으며, 2020.10.15.부터 효력 발생
- 동 시행령에 의거 통관 신고 시 수입허가서가 없는 경우, 라벨링이 없는 경우, 기사용된 우표를 재사용한 경우, 위조된 우표 또는 도장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품목 당 최대 2억동(한화 약1천만원) 상당의 벌금 부과

\* 출처 : [http://vanban.chinhphu.vn/portal/page/portal/chinhphu/hethongvanban?class\\_id=1&mode=detail&document\\_id=200841](http://vanban.chinhphu.vn/portal/page/portal/chinhphu/hethongvanban?class_id=1&mode=detail&document_id=200841)

### 2. 베트남 정부·한국 롯데마트간 협업을 통한 베트남 농민 지원

-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형유통매장인 롯데마트에서 베트남 정부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농민들이 수확한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음

\* 출처 : <https://www.24h.com.vn/thi-truong-24h/nha-ban-le-han-quoc-dong-hanh-cung-viet-nam-vung-vang-vuot-qua-dai-dich-c341a1179784.html>

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한국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(VKFTA)은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역액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에 큰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평가받고는 있으나,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VK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주요품목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단순한 부품소재, 포장재 등으로 실질적으로 VK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음
- 그로 인해 베트남 재정부는 VKFT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,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시에 베트남내 외자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조세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